**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**

작가 \_\_\_\_\_\_\_\_\_(이하 ‘작가’)와 [그의 대리인 \_\_\_\_\_\_\_\_\_(이하 ‘대리인’) 및] 건축주 \_\_\_\_\_\_\_\_\_(이하 ‘건축주’)는 20 . . . 아래와 같이 건축물 미술작품의 제작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계약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(이하 ‘미술작품’)의 제작 의뢰, 설치 및 전시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사항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건축물의 개요)** 본 계약에 따라 미술작품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.

1. 건축물명 :

2. 위치 :

3. 예상 준공일 : 20 . . .

**제3조(미술작품의 개요)** ① 작가가 제작·설치하는 미술작품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.

1. 명칭 :

2. 종류

 가. 조형예술물

 □ 회화 □ 조각 □ 공예 □ 사진 □ 서예 □ 벽화 □ 미디어아트

 □ 기타(\_\_\_\_\_\_\_\_\_\_\_)

 나. 공공조형물

 □ 분수대 □ 기념탑·기념비 □ 동상 □ 폭포 □ 기타(\_\_\_\_\_\_\_\_\_\_\_)

3. 제작·설치 기간 : 20 . . . ~ 20 . . .

 다만, 관계기관의 미술작품 심의 일정 등으로 제작 및 설치 시점이 달라질 경우 협의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4. 설치 위치 : (건축물 또는 부지 내의 위치를 특정)

5. 내용 : 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 별첨

② 전항 제5호에 따라 별첨하는 내역서 내지 설계서에는 제작방법, 재료, 크기, 상세 위치 및 [별지]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4조(건축주의 계약 대가 지급)** ① 건축주는 작가에게 창작비, 제작비, 설치비, 간접경비 등을 포함한 총 계약 대가로 금 ○○○원을 아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.

1.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총액의 10% 인 ○○○원 지급

2. 계약 체결 후 심의 통과 시 중도금으로 총액의 40% 인 ○○○원 지급

3. 제8조 제1항에 따른 설치 승인 후 ○일 이내에 잔금으로 총액의 50% 인 ○○○원 지급

② 건축주는 전항 제3호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작가에게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건축주는 전항의 요구에 따른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.

**제5조(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)** ① 건축주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, 작가는 건축주가 심의를 받을 때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, 작가는 건축주와의 협의 하에 지체 없이 기존 심의안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은 경우, 당사자는 부과된 조건을 성취하기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6조(미술작품의 제작)** ① 작가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여 성실히 작품 활동을 하여야 하고, 건축주는 작가가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건축주는 예술 창작과 표현에서 작가의 견해를 존중하고, 작품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작가는 심의 완료 후 제작 착수 전 심의 통과안에 부합하게 형태, 크기, 재료 등이 명기된 설계 도면, 시방서, 내역서 등 제작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상호 협의를 거쳐 제작 도서를 확정한다.

④ 작가는 미술작품을 제작·설치함에 있어 전항에 따른 제작 도서에 의하여야 한다.

⑤ 전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미술작품의 규격과 형태 등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, 양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정·변경할 수 있다.

⑥ 전항의 수정·변경에 따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,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미술작품의 설치)** ① 작가는 미술작품의 제작 완료 후 건축주의 사전 검수를 거쳐 현장에 지정된 설치 위치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때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, 운송 보험 가입 등 제반 사항은 작가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행한다.

② 작가는 미술작품의 설치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작품 설치를 위한 바닥 구조물 등의 시공 내용을 확인한다.

③ 건축주는 심의안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설치함에 있어 필요한 작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8조(미술작품의 설치 승인 및 확인)** ① 작가는 미술작품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건축주로부터 미술작품 설치 완료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건축주는 미술작품 설치 완료 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9조(미술작품의 유지·관리)** ① 작가는 건축주에게 미술작품이 적절하게 전시 및 유지·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요령 등을 담은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을 제공할 수 있다.

② 건축주는 작가가 제공한 미술작품의 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미술작품이 예술적·공공적 가치를 달성하도록 유지·관리하여야 하며, 설치된 미술작품과 주변 환경이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미술작품이 미술작품 자체의 하자를 제외한 사유로 훼손된 경우, 건축주가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. 보수 작업은 원칙적으로 작가에게 요청하되,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보수할 수 있다.

④ 전항 제2문 후단에 따라 건축주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미술작품을 보수하는 경우, 건축주는 보수 사실과 보수 방법을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.

⑤ 미술작품 설치 후 건축물 증·개축, 리모델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수정·변경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주는 재심의를 받아야 하며, 작가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 이와 같은 수정·변경이 건축주의 요청에 따른 것일 경우, 그에 따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.

**제10조(지체상금)** 작가는 제3조에서 정한 제작기간 내에 미술작품을 제작·설치하지 못하여 준공일이 지체될 경우 1일당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○○%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건축주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쟁 등 당사자가 계약 당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1조(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)** ① 작가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에 따른 총 계약 대가의 ○○%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, 해당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후 ○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작가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축주는 제1항의 이행보증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할 수 있다.

③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미술작품의 제작, 설치 후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총 계약 대가의 ○○%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건축주를 피보험자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보증기간은 설치 완료 후 2년으로 한다.

**제12조(미술작품의 소유권 귀속)** ① 미술작품의 소유권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잔금 지급과 동시에 건축주에게 이전된다.

② 작가는 본 계약상의 미술작품과 동일한 미술작품을 설치 위치 외에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없다.

③ 작가가 본 계약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및 승인 후 동일한 컨셉(concept)의 연작·에디션(edition)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본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제13조와 제14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
**제13조(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)** ① 미술작품의 저작재산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.

② 건축주는 미술작품의 설치로 그 미술작품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.

③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미술작품이 설치된 건축물의 홍보 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미술작품의 복제물을 판매 등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할 경우에는 건축주는 작가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

**제14조(미술작품의 저작인격권)** ① 건축주는 작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미술작품과 근접한 위치에 작품명, 작가명, 작품의 재료 및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.

② 건축주는 설치장소의 변경, 작품 자체의 수정·변경 등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건축물을 건축(증·개축 및 리모델링을 포함한다)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미술작품의 동일성을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 + - * 1. **제15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** ①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.

② 작가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제작 도서에 부합하게 미술작품을 제작·설치함에 있어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제3자에게 하도급·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체적인 하도급·위임 범위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.

**제16조(성폭력, 성희롱 등 방지)** ① 당사자는 성폭력,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, 상대방이 가지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한다.

② 당사자는 형법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법률상 규정된 성폭력,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된다.

**제17조(계약의 해지)** ① 건축주는 미술작품이 제5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②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③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,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④ 본 계약에 따른 제작, 설치 기간 중 건축물 공사 중단 등 부득이한 사정 변경으로 건축주가 이를 해지하여야 할 경우, 미술작품이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하고 해당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건축주와 작가 간에 협의하여 정산 및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, 성희롱 그밖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⑥ 본 계약에 대한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**제18조(손해배상 등)** 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,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다만, 전조 제2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.

② 전조 제1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작가는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에서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심의를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[별지]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의 ‘심의 준비비’ 중 세금계산서, 영수증 기타 객관적인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.

**제19조(이면 합의 금지)** ①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(이면, 부속,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, ‘계약’, ‘합의’, ‘약정’, ‘협약’, ‘양해각서’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)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다.

**제20조(분쟁해결 등)**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② 당사자가 본 계약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[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]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**제21조(본 계약의 효력)**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.

② 본 계약은 그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, 논의, 합의, 회의록, 비망록, 메모, 이메일, 양해각서 기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과거로부터 본 계약 체결일까지 당사자 간의 일체의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에 우선하며, 그와 같은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나 의사는 본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상반되는 한 효력이 없다.

③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·변경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된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, 서명날인된 부속 합의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기타)**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당사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, 관련 법규, 일반적인 상관례, 대한민국 미술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.

|  |
| --- |
| **제23조(대리인의 선정 및 대가 지급)** ① 작가는 본 계약상의 권리·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.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.1. 성명 : 2. 주민등록번호 : 3. 주소 : 4. 연락처 : ② 작가는 본 계약 체결 후 ○일 이내에 대리인에게 위 권리·의무의 이행에 대한 대가로 ○○○원을 지급하여야 한다.**제24조(대리인의 권한)** 작가는 대리인에게 본 계약상의 권리·의무 중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1. 작가와 건축주 간의 작품 기획, 제작에 관한 업무 가. 제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‘미술작품의 종류, 제작·설치 기간, 설치 위치’ 등에 관한 협의 및 조율 □ 나.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에서 정한 ‘제작 시안을 담은 내역서 내지 설계서’, ‘설치 비용 산출내역서’ 등의 서류 준비 □2.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에 필요한 업무 가.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협조 □ 나. 제5조 제2항, 제6조 제6항,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재심의 절차 협조 □3.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제반 절차상 업무 가. 제4조에서 정한 작품 확인서 또는 보증서의 전달 □ 나. 제6조에서 정한 제작 도서 준비 및 제출 □ 다. 제7조에서 정한 설치에 필요한 운송 장비 대여, 운송 보험 관련 업무 □ 라. 제9조에서 정한 관리 매뉴얼 제공 □ 마. 제11조에서 정한 이행보증보험 및 하자보증보험 계약의 각 체결 및 증권 제출 업무 □ 바. 그 밖에 미술작품의 제작 및 설치 과정에 부수하는 절차상의 업무 □**제25조(대리인의 의무)** ① 대리인은 작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② 대리인은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이에 우선하는 새로운 합의(이면, 부속, 구두 합의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으며, ‘계약’, ‘합의’, ‘약정’, ‘협약’, ‘양해각서’ 등 그 표제와 형식을 불문한다)를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③ 위와 같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미술작품의 대가 일부를 되돌려 받기로 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또는 이와 유사한 취지의 약정을 할 경우 이는 사법상 효력이 없으며, 이러한 별도 합의의 체결 당사자 및 별도 합의를 실제로 이행한 자는 그에 따른 민·형사적 책임을 부담한다. |

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(대리인이 있는 경우 3)부를 작성하고, 작가와 건축주 (및 대리인)이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계약 체결일 : 20 년 월 일

 작 가 : 인

 주 소 :

 [대리인 : 인

 주 소 : ]

 건축주 : 인

 주 소 :

 대표자 :

[별지]

**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구분** | **금액(원)** | **비율(%)** | **비고** |
| **창작비****(Artist Fee)**[[1]](#footnote-1) | **작가비** |  |  |  |
| **사례비** |  |  |  |
| **제작비**[[2]](#footnote-2) | **재료비** |  |  |  |
| **인건비** |  |  |  |
| **설치비**[[3]](#footnote-3) | **작품 운송비** |  |  |  |
| **현장 설치비** |  |  |  |
| **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** |  |  |  |
| **대리인 지급 대가**[[4]](#footnote-4) | **대행수수료** |  |  |  |
| **행정비용**[[5]](#footnote-5) | **심의 준비비** |  |  | 본 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반환의무가 면제되는 ‘실비’의 산정 기준. 다만, 지출 증빙 서류 필요 |
| **기타** |  |  | 모형제작비 등 |
| **간접경비**[[6]](#footnote-6) | **관리·운영비** |  |  | 직접비(창작비+제작비+설치비)의 ○% |
| **기타 비용**[[7]](#footnote-7) | **이행보증보험료** |  |  |  |
| **하자보증보험료** |  |  |  |
| **기타 필요 비용** |  |  |  |
| **합계** |  | **(100%)** |  |

1. ‘창작비’는 전시에 대한 보수인 ‘작가비’와 작품을 창작하는 데 소요되는 보수인 ‘사례비’를 포함하며, 문화체육관광부의 ‘미술창작 대가기준’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. [↑](#footnote-ref-1)
2. ‘제작비’는 작품 제작에 필요한 ‘재료비’와 외주 등을 통한 ‘인건비’를 포함하며, 재료비 항목은 필요한 경우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. [↑](#footnote-ref-2)
3. ‘설치비’는 ‘작품 운송비’, ‘현장 설치비’, 설치에 필요한 ‘기초구조물 및 부대공사비’를 포함한다. [↑](#footnote-ref-3)
4. ‘대리인 지급 대가’는 작가가 대리인을 선정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이다. [↑](#footnote-ref-4)
5. ‘행정비용’은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신청 시 필요한 ‘심의 준비비’(심의도서제작비 등 포함), ‘모형제작비’ 등을 포함하며, 이 중 ‘심의 준비비’는 미술작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작가가 지출한 ‘실비’ 범위에서는 반환 책임을 면한다(본 계약 제18조 제2항). [↑](#footnote-ref-5)
6. ‘간접경비’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각종 관리비(수도광열비, 복리후생비, 소모품비, 여비·교통비·통신비, 세금과공과, 도서인쇄비, 지급수수료 등), 회계·경리 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, 유지보수비 등을 포함한다. 참고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-226호) 제9조에서는 ‘제경비’를 ‘직접인건비’의 110~120%로 정하고 있고,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-34호) [별표1]에서는 연구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‘간접비’ 비율을 ‘직접비’(인건비, 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과제추진비 등)의 약 10~30%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. [↑](#footnote-ref-6)
7. ‘기타 비용’에는 ‘이행보증보험료’, ‘하자보증보험료’ 등의 보험료가 포함되며, 여기에 기타 필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. [↑](#footnote-ref-7)